



## 역량기반 교육품질관리세칙

[제목개정 2020. 8.10]

제정일	2016. 3. 1
개정일	2023.11. 1
개정차수	9차
담당부서	교육혁신지원센터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동서대학교 역량기반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10)

제 2조 (학과 역량교육평가위원회) ① 학과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과는 학과 역량교육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8.10)

② 학과 역량교육평가위원회는 학과장 및 학과의 전임교원의 과반과 2인 이상의 산업체 실무 전문가 또는 역량교육전문가 등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단, 교양 역량교육평가위원회는 교양 교육센터에서 본교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8.10, 2023.11. 1)

③ 학과 역량교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8.10)

1.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성과 및 수요자만족도에 대한 학과 자체평가 수행 (개정 2020. 8.10)
2. 학과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 (개정 2020. 8.10)
3. 역량기반 교육과정 학과 자체평가 및 CQI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2018. 9. 1, 2020. 8.10)

④ 학과 역량교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10)

[제목개정 2020. 8.10]

제 3조 (대학 역량교육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역량교육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8.10)

② 대학 역량교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 교양교육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하며, 약간 명의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2019.11. 1, 2020. 8.10, 2021. 4.15, 2023. 1. 1, 2023.11. 1)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15)

④ 대학 역량교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10, 2023. 2. 1)

1. 역량기반 교육과정 학과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9. 1, 2020. 8.10, 2023. 2. 1)
2. 역량기반 교육과정 대학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10, 2023. 2. 1)
3. 대학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 (개정 2020. 8.10)
4. (삭제 2023. 2. 1)

⑤ 대학 역량교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10)

⑥ 대학 역량교육평가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8.10)

[제목개정 2020. 8.10]

제 4조 (교과목CQI보고서) ① 역량기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처리 종료 후 교과목CQI보고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6. 9. 1, 2018. 9. 1, 2020. 8.10)

② 본조 제 1항의 교과목CQI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8. 9. 1)

1. 수업운영 후 그 개선방안 도출
2. 학습성과 개선방안 도출
3. 자체 강의평가 결과 후 그 개선방안 도출

[제목개정 2018. 9. 1]

제 5조 (학과 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CQI결과보고서) ① 학과장은 매 학년도 2학기의 성적처리 종료 후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학과 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CQI결과보고서를 교육혁신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1, 2018. 9. 1, 2019. 3. 1, 2019.11. 1, 2020. 8.10, 2023.11. 1)

② 본조 제 1항의 학과 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CQI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8. 9. 1, 2023.11. 1)

1. 맥락평가(Context evaluation) : 환경 및 요구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분석, 인재양성 유형, 교육목표, 핵심역량목표에 대한 평가 후 그 개선방안 도출 (개정 2020. 8.10)
2.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 교육과정 편성, 교수역량, 산업체 연계, 교육환경, 정책 순응에 대한 평가 후 그 개선방안 도출 (개정 2020. 8.10)
3.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 수업설계 및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수업평가,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후 그 개선방안 도출 (개정 2020. 8.10)
4. 결과평가(Product evaluation) : 교육목표달성도, 교육과정 이수율, 취업률, 충원률, 교육만족도에 대한 평가 후 그 개선방안 도출 (개정 2020. 8.10)

5. (삭제 2020. 8.10)

③ 교양교육과정은 본조 제2항과 달리 별도의 매뉴얼에 따라 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CQI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3.11. 1)

[제목개정 2018. 9. 1, 2023.11. 1]

제 6조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자체평가보고서) 대학 역량교육평가위원회는 학과 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CQI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대학자체평가의 결과를 담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과 및 부서에 배포한다. (개정 2018. 9. 1, 2020. 8.10, 2023.11. 1)

[제목개정 2018. 9. 1, 2020. 8.10]

제 7조 (교육품질개선계획) ① 학과 및 부서의 장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라 교육품질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8. 9. 1, 2020. 8.10)

② 교육품질개선계획은 CIPP 교육과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반영한다. (개정 2016. 9. 1, 2018. 9. 1, 2020. 8.10)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